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 6. 21 개정됨에 따라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율을 경북도 안과 같이 조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읍.면장 위임규정 삭제

나. 대지분할시 건축법 제49조 ⇒ 성주군 건축조례 제29조변경

다. 공유재산심의 생략사항 중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및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용도폐지 삭제

라. 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납부방법 신설(안 제19조의2)

마.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방법 신설(안 제22조의2)

바. 매각대금 납부시 이자율 연 4% ⇒ 연 3%변경(안 제38조)

사. 관사관리에서 1급 관사 삭제

아. 변상금 납부시 연 3% 이자 가산(안 제63조)

차. 과오납금 반환시 연 3%이자 가산(안 제63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 ('13. 11. 06 ~ 11. 26) :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결과 제외

바.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붙임 1)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 6. 21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율을 경상북도 표준안과 같이 조정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써

❑ 주요 내용으로는

○ 군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읍면장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대지분할시 근거 규정을 건축법 제49조에서 성주군 건축조례 제29조로 변경하며 면적과 금액에 상관없이 공유재산을 임의로 취득, 처분, 용도변경, 폐지를 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행정재산 교환차금 및 사용료의 납부방법의 신설·매각대금 납부시 이자율 연 4%에서 연 3%인하, 관사 관리 중에서 1급 관사(군수)는 삭제, 변상금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시에는 연 3% 이자 가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하였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적용 금리를 상부 표준안과 같이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